HOBAN SUMMIT 송파Ⅱ

위례신도시 A1-4BL 호반 써밋 송파Ⅱ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9. 12. 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12.20.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아파트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2에 의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본 주택은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해당 지구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가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서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거주한자(2018.12.20.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우선 공급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2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로서 각 호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 · 시행되어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제4조 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 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 · 당첨 · 계약 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20.) 현재 1년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하여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외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였을 시에는 기간 해당지역 거주자로 해외 거주한 기간에 (...) 청약할 경우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국내 거주에서 제외되는 해외거주 인정기준
 ①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제도악용을 막기 위해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로 재출국 시 계속 해외 거주로 봄)
 ②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
 ☞ 해당기간(①,②) 동안 국내 거주로 불인정되어 해당 주택 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불가 합니다.
 ☞ 단순 3개월 미만의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가능 합니다.
■ 적용사례
 ①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해외에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자 ☞ 해당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가능 합니다.
 ②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계속하여 90일이 되지 않는 경우 ☞ 해당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가능 합니다.
 ③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불가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본인과 세대원 포함),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단, 주택형 전용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선정함)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해당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나머지 25%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중에 추첨하고 그래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중에서 추첨하게 됩니다.
 • 이때 1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본 아파트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② 본 아파트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계약에 관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을 것
 ③ 본 아파트의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할 것
 • 1주택자가 위 요건 중 ②에 따른 신고 또는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른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 제1호의3 참조). 또한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따라 형사 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가점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유지되며,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변경되어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은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 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개편으로 인한 예외사항 외 청약자(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동일 공급유형으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각각 청약(특별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일반공급)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되오니, 이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2순위로 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과거 5년 이내의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각목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및 지역(직장 포함) 주택조합의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3호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 ·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관리처분계획(재개발/재건축) 및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인가일부터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본 아파트의 당첨 또는 계약체결로 인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조합원 분양신청 불가/ 현금청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자는 제외)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일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 등)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제47조 이전기관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 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부터 1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7호 가목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 토지임대주택 – 당첨일부터 5년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 사실 등) 조회 방법 : 본 주택에 청약신청 전 주택청약 가입은행을 통하여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당첨 사실 조회 및 청약 제한사항을 미리 확인하시어 부적격 당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 당첨제한기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모든 지역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 신청금 → 청약통장으로 신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 제2호에 의거 가점제 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또한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 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의 가점제 당첨 제한자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
 - 주택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에 필요한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우선공급에 있어 당해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간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 일반공급 주택 :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8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단, 대출제한 사항은,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중도금대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금융공사 등)의 중도금 대출 보증규제(분양가 9억원 초과)대상으로 중도금대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을 통한 중도금 집단 대출은 불가합니다.
 - 상기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는 보증기관의 중도금 분양보증 규정에 의거한 사항이며, 본 아파트의 옵션계약(마이너스옵션 계약 등) 선택 여부에 따른 계약자의 총 취득가액과는 무관함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계약자의 중도금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알선을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조달 불가로 인한 이의제기 및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상기 계약자가 스스로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신용대출 등의 대출금을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수분양자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에 따른 제반비용(보증수수료, 인지대) 등을 부담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하층을 희망하여 청약 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다만, 아래 대상자 사이 경쟁이 발생할 경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 최하층이라 함은 1층 또는 1층이 없는 경우의 최저층을 말하며, 최하층의 분양가격이 그 위층의 분양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우선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신청자가 적은 경우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1. 분양권등 취득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공급계약–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계약일.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권등으로 보지 아니함
 가. 시행일('18.12.11) 전 공급계약된 건   나.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된 건
 다. 시행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신청된 건   라. 시행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승인(정비사업) 신청된 건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공급계약–준공후–분양권(입주권)", "전매–준공후–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주택으로 등기되므로 엑셀검색결과상 동일물건이 있는 경우 1주택으로 처리됨
 2. 분양권등 처분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색되어 나타났으나 증여, 경매, 공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 당사자가 소유했던 공급계약서에서 다른 사람에게 명도된 날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일정기간 주택의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 요구 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서울특별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작성을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일반공급 1순위 당해지역	일반공급 1순위 기타지역	일반공급 2순위 당해지역	일반공급 2순위 기타지역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및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일정	2019.12.26.(목) (08:00 ~ 17:30)		2019.12.27.(금) (08:00 ~ 17:30)		2020.01.03.(금)	2020.01.04.(토) ~ 2020.01.08.(수) (10:00 ~ 16:00)	2020.01.14.(화) ~ 2020.01.16.(목) (10:00 ~ 16:00)
방법	인터넷 청약		인터넷 청약		개별조회 (www.apt2you.com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사 홍보관 방문 제출	당사 홍보관 방문 계약
장소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일반 공급)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당사 홍보관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 2관 1층)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당사 홍보관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 2관 1층)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2018.05.28. 접수 부터 적용) 가 실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으로 정해진 위 기간 동안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송파구 주거사업과 – 15316호(2019.12.1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 A1–4 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10~25층 11개동 총 7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2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면적(지하 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일반분양세대수	최하층우선배정세대수
민영주택	2019000699	01	108.8119A	108A	108.8119	27.2214	136.0333	118.5594	254.5927	65.6140	474	474	24
		02	108.0459B	108B	108.0459	30.5873	138.6332	117.7249	256.3581	65.1521	24	24	2
		03	108.8109C	108C	108.8109	29.0391	137.8500	118.5583	256.4083	65.6134	109	109	6
		04	110.8519A	110A	110.8519	27.6002	138.4521	120.7821	259.2342	66.8442	76	76	–
		05	108.8119T	108T	108.8119	27.2214	136.0333	118.5594	254.5927	65.6140	4	4	–
		06	110.8519T	110T	110.8519	27.6002	138.4521	120.7821	259.2342	66.8442	6	6	–
		07	138.8369T	138T	138.8369	32.7803	171.6172	151.2743	322.8915	83.7192	4	4	–
		08	140.8769T	140T	140.8769	33.1591	174.0360	153.4970	327.5330	84.9494	3	3	–
합 계											700	700	3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주택형	구분	공급세대수	층구분	해당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 1회(10%) 계약시	계약금 2회(10%) 2020-02-20	중도금 1회(10%) 2020-05-06	중도금 2회(10%) 2020-08-06	중도금 3회(10%) 2020-11-06	중도금 4회(10%) 2021-02-05	중도금 5회(10%) 2021-06-07	중도금 6회(10%) 2021-10-06	잔금[20%] 입주예정일
108.8119A	108A	474	1	15	546,976,000	364,824,000	911,800,000	91,170,000	91,170,000	91,170,000	91,170,000	91,170,000	91,170,000	91,170,000	91,170,000	182,440,000
			2	24	546,976,000	364,824,000	911,800,000	91,170,000	91,170,000	91,170,000	91,170,000	91,170,000	91,170,000	91,170,000	91,170,000	182,440,000
			3	28	546,976,000	369,424,000	916,400,000	91,630,000	91,630,000	91,630,000	91,630,000	91,630,000	91,630,000	91,630,000	91,630,000	183,360,000
			4	28	546,976,000	369,424,000	916,400,000	91,630,000	91,630,000	91,630,000	91,630,000	91,630,000	91,630,000	91,630,000	91,630,000	183,360,000
			기준층	379	546,976,000	374,024,000	921,000,000	92,090,000	92,090,000	92,090,000	92,090,000	92,090,000	92,090,000	92,090,000	92,090,000	184,280,000
108.0459B	108B	24	2	2	543,125,000	367,075,000	910,200,000	91,010,000	91,010,000	91,010,000	91,010,000	91,010,000	91,010,000	91,010,000	91,010,000	182,120,000
			3	2	543,125,000	371,675,000	914,800,000	91,470,000	91,470,000	91,470,000	91,470,000	91,470,000	91,470,000	91,470,000	91,470,000	183,040,000
			4	2	543,125,000	371,675,000	914,800,000	91,470,000	91,470,000	91,470,000	91,470,000	91,470,000	91,470,000	91,470,000	91,470,000	183,040,000
			기준층	18	543,125,000	376,275,000	919,400,000	91,930,000	91,930,000	91,930,000	91,930,000	91,930,000	91,930,000	91,930,000	91,930,000	183,960,000
108.8109C	108C	109	1	4	546,971,000	380,529,000	927,500,000	92,740,000	92,740,000	92,740,000	92,740,000	92,740,000	92,740,000	92,740,000	92,740,000	185,580,000
			2	6	546,971,000	380,529,000	927,500,000	92,740,000	92,740,000	92,740,000	92,740,000	92,740,000	92,740,000	92,740,000	92,740,000	185,580,000
			3	6	546,971,000	385,229,000	932,200,000	93,210,000	93,210,000	93,210,000	93,210,000	93,210,000	93,210,000	93,210,000	93,210,000	186,520,000
			4	6	546,971,000	385,229,000	932,200,000	93,210,000	93,210,000	93,210,000	93,210,000	93,210,000	93,210,000	93,210,000	93,210,000	186,520,000
			기준층	87	546,971,000	389,929,000	936,900,000	93,680,000	93,680,000	93,680,000	93,680,000	93,680,000	93,680,000	93,680,000	93,680,000	187,460,000
110.8519A	110A	76	2	2	557,231,000	469,869,000	1,027,100,000	102,690,000	102,690,000	102,690,000	102,690,000	102,690,000	102,690,000	102,690,000	102,690,000	205,580,000
			3	6	557,231,000	475,069,000	1,032,300,000	103,210,000	103,210,000	103,210,000	103,210,000	103,210,000	103,210,000	103,210,000	103,210,000	206,620,000
			4	6	557,231,000	475,069,000	1,032,300,000	103,210,000	103,210,000	103,210,000	103,210,000	103,210,000	103,210,000	103,210,000	103,210,000	206,620,000
			기준층	62	557,231,000	480,269,000	1,037,500,000	103,730,000	103,730,000	103,730,000	103,730,000	103,730,000	103,730,000	103,730,000	103,730,000	207,660,000
108.8119T	108T	4	2	4	546,976,000	479,624,000	1,026,600,000	102,640,000	102,640,000	102,640,000	102,640,000	102,640,000	102,640,000	102,640,000	102,640,000	205,480,000
110.8519T	110T	6	1	2	557,231,000	484,169,000	1,041,400,000	104,120,000	104,120,000	104,120,000	104,120,000	104,120,000	104,120,000	104,120,000	104,120,000	208,440,000
			2	4	557,231,000	489,369,000	1,046,600,000	104,640,000	104,640,000	104,640,000	104,640,000	104,640,000	104,640,000	104,640,000	104,640,000	209,480,000
138.8369T	138T	4	1	4	697,906,000	597,294,000	1,295,200,000	129,500,000	129,500,000	129,500,000	129,500,000	129,500,000	129,500,000	129,500,000	129,500,000	259,200,000
140.8769T	140T	3	1	3	708,161,000	605,239,000	1,313,400,000	131,320,000	131,320,000	131,320,000	131,320,000	131,320,000	131,320,000	131,320,000	131,320,000	262,840,000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홍보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선납 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108.8119A	108.0459B	108.8109C	110.8519A	108.8119T	110.8519T	138.8369T	140.8769T	비고
홍보관 등의 약식 표기	108A	108B	108C	110A	108T	110T	138T	140T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관 및 카다록/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 및 동호수별 돌출 발코니 유형 구분

구분			108A	108B	108C	110A	108T	110T	138T	140T
표준형 (돌출발코니 없음)			• 1401동 1,3,4호 2,3층 • 1402동 1호 2~20층 • 1402동 3,4호 1~3층 • 1403동 1호 2~7,9,10,13,14,16층 • 1403동 3호 2,3층 • 1404동 1호 2~20층 • 1404동 3,4호 1~3층 • 1405동 1호 2,3층 • 1405동 3,4호 1~3층 • 1406동 1~4호 3~10층 • 1407동 1호 2~10층 • 1407동 3호 1~10층 • 1410동 1,2호 1~18층 • 1410동 3,4호 1~3층 • 1411동 1,2호 1~18층 • 1411동 3,4호 1~3층	• 1403동 4호 2~16층 • 1407동 4호 2~10층	• 1401동 2호 2,3층 • 1402동 2호 1~20층 • 1403동 2호 2~16층 • 1404동 2호 1~20층 • 1405동 2호 1~3층 • 1407동 2호 1~10층	• 1408동 1~4호 3~14층 • 1409동 1,2호 2~15층	• 1406동 1~4호 2층	• 1408동 1~4호 2층 • 1409동 1,2호 1층	• 1406동 1~4호 1층	• 1408동 1,2,4호 1층

(침실2 · 침실3 개방형 · 폐쇄형 세부 동호수 구분은 원문 표 참조)

※ 본 아파트는 위례신도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지침 및 단지 외관 특화 적용 단지로 주택형별 일부세대에 외부 돌출형 발코니가 설치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타입별 신청만 가능하며, 돌출형 발코니 유무 및 유형에 따른 신청 구분은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계약자는 상기 돌출형 발코니 설계 및 시공 여부를 사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 및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돌출형 발코니가 설치된 타입은 표준형 타입에 비해 거실, 침실2, 침실3, 알파룸 등이 확장시에 300mm 짧게 설치됩니다.(타입별 상이)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송파구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아파트 전세대 전용 85㎡ 초과 금액임.
• 발코니는 전 세대 비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은 추가 선택품목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할 수 있음.(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 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합계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공급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이후 도래하는 최초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연체료 납부 시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및 유상옵션대금(2차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 은행 전산망 장애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납부일보다 늦은 경우에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일 은행 업무 시간 내 납부를 권장함.
• 중도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3호에 의거하여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 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을 예정일로 하였으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중도금대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금융공사 등)의 중도금 대출 보증규제(분양가 9억원 초과)대상으로 중도금대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을 통한 중도금 집단 대출은 불가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알선을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음)하여야 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사유로 입주 시 지연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 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계약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Ⅱ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20.) 현재 서울특별시에 연속 1년 이상(2018.12.20.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세대주(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1순위 청약 가능) ※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 바람.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청약 전 반드시 아파트 투유(www.apt2you.com)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요망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 제한 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가목 및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기 분양주택 당첨 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청약접수 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 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받지 않음) •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청약 선정기준(가점제/추첨제)이 분류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됨. 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하며 동일세대에서 중복 청약하는 경우는 부적격 처리함.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 인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 요건 관련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 : 큰 주택규모 청약 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부금(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한 경우)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저축 변경 : 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 폐지(2017.04.03. 이후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지역 간 전입 : 모집공고 당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 시 1순위 청약접수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 : 모집공고 당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세대주 변경 : 모집공고 당일까지 세대주 변경 시 1순위 청약접수 가능함 ※ 당해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1순위 당해지역 거주자 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해당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함.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산정 시 서울특별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서울특별시 관내 행정구역으로 전입한 경우(예 : 서울특별시 → 하남시 → 서울특별시)에는 새로 전입한 일자부터 산정하여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도권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야 함.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 간 예금금액 차액 발생 시 청약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재당첨 제한(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자격 제한의 적용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 제한(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제한 기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전주택형 (85㎡초과)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가점제 50%, 추첨제 5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공급함. ※ 단,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한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는 제외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서울특별시 (1년 이상) / 경기도 ·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1년 미만)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 (2순위로 청약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 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 기준 금액에 충족하지 않은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전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 ·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2순위 청약 불가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관련)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별표1] 1호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 · 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 · 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위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함(동 규칙 제2조 제7호의3).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록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③ 입주자저축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신청자 본인은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동 · 호수 선정 방법

구분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해당 주택 건설지역(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 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함. • 가점제 당첨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만65세 이상자,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함. 단, 최하층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음.)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해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합니다. (동 · 호수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발표 일에 함께 발표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하여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할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됨. •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한다) 유지됨.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2019.12.20.)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 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 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음. • 청약 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으니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구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적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 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기입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 예치 금액 청약 가능)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당첨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검색 및 판단 대상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과 그 세대원(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해 전원입니다.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2순위 청약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Ⅲ 청약신청 방법

■ 일반공급 청약 방법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 접수일 및 접수시간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서울특별시(1년 이상) / 경기도 ·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1년 미만)	2019.12.26.(목)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국민은행을 제외한 청약 참가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청약통장 참가은행(15개) : 기업, KB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아래 "인터넷 청약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2019.12.27.(금) 08:00~17:30	

※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는 1순위 당해지역에 청약이 가능하며,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는 기타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으로 접수 하여야 함(타지역 청약 접수시 부적격 처리됨)   ※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됨.

■ 일반공급 인터넷 청약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 일반공급 인터넷 청약 접수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가능함. (청약 신청 가능시간 08:00~17:3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KB 국민은행(KB 국민은행 청약자)
• PC 청약 시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APT청약신청"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스마트폰 청약 시 :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APT2you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PC 청약 시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스마트폰 청약 시 :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 "주택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 완료 기준으로 17:30 이전 접수 완료하지 않으면 청약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없이 청약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 ·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순위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 (청약접수 가능 시간 09:00~16:00)

구분		구 비 사 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부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은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인 서명이 있는 위임장 제출 가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와 관계 기입 표기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를 확인하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Ⅳ 당첨자 발표 및 당첨자 서류검수 일정

■ 당첨자 발표 및 서류검수 일정

구 분	당첨자 및 동호수발표	당첨자 사전 서류 검수 일정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포함)	– 일시 : 2020.01.03.(금)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또는 APT2you앱에서 개별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기간 : 2020.01.04.(토) ~ 2020.01.08.(수) (10:00~16:00) – 장소 : 당사 홍보관(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 2관)

※ 당첨자 명단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 · 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은행창구(일반공급)를 통해 청약한 고객은 은행창구(일반공급)에 방문하여 청약신청에 관한 정보(주택형, 주택명,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 · 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및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홍보관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유지됨.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세대 발생 및 소명 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 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해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미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 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홍보관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함.(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 정당당첨자인 경우에도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 분리세대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상기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음.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홍보관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또는 APT2you 앱(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1.03.(금) ~ 2020.01.12.(일) (10일간)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ARS)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서비스 종료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특별공급 제외)	
	제공일시	2020.01.03.(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제출 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분	제출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무주택 서약서	–	당사 홍보관에 비치, 무주택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	1주택 실수요자 주택 처분 확약서	–	당사 홍보관에 비치,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우선 공급받은 경우(추첨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당사 홍보관에 비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주거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순위로 당첨시
일반공급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기 초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1년 이상),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상기 초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제출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홍보관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사업주체는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Ⅴ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1차 계약금 입금 후 정당계약일에 홍보관으로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계 약 일 정	계 약 장 소
정당당첨자 계약체결	2020.01.14.(화) ~ 2020.01.16.(목), 3일간, 10:00~16:00	당사 홍보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 2관

■ 계약 시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지침에 의거 '해당 청약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무작위 추첨)합니다. 잔여세대 발생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하며, 이후 분양분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였다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입주금 및 금융비용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자의 계약은 취소되며,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 및 부양가족, 당첨사실 등 청약자격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로 판명되어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계좌부활요청서(홍보관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제한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여부 및 소유권 이전여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입주를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본 공동주택의 관계관청(교육청, 인허가청 등) 요청 할 경우 해당 분양계약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보호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공사진행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① 사업주체는 동 법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사항은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제출유형 필수	해당자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본인 계약시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자격검증서류	본인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서류검수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날인과 일치해야 함(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발급분에 한함.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에 '아파트 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 가능)
	○		계약금 입금증	본인	무통장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내역증(홍보관에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수납 일체 불가함)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발급분에 한함.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에 '아파트 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
	○		위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당사 홍보관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2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외국인은 공신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 및 계약 체결 이후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입금 예시 : 102동 103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20103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KEB하나은행	215–910031–55104	㈜호반건설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2차 계약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분양대금 1차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2020.01.14.(화)~2020.01.16.(목)]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2차 계약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분양대금 중 1차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 됨)   • 상기 관리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일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자 대출 불가 안내
• 본 아파트는 중도금대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금융공사 등)의 중도금 대출 보증규제(분양가 9억원 초과)대상으로 중도금대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을 통한 중도금 집단 대출은 불가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계약자의 중도금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알선을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조달 불가로 인한 이의제기 및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계약자가 스스로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신용대출 등의 대출금을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수분양자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에 따른 제반비용(보증수수료, 인지대) 등을 부담하여야 함.

■ 입주자 사전 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에 의거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2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적용하며,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부대 ·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실내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외), 작은도서관, 근린생활시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규정에 의합니다.

Ⅵ 추가 선택 품목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 (계약 시)	중도금 (2021-03-05)	잔금 (입주지정일)	비고
108A	8,870,000	880,000	2,000,000	5,990,000	공사부위 홍보관 및 계약 시 확인 필요
108B	8,470,000	840,000	2,000,000	5,630,000	
108C	8,500,000	850,000	2,000,000	5,650,000	
110A	8,610,000	860,000	2,000,000	5,750,000	
108T	8,870,000	880,000	2,000,000	5,990,000	
110T	8,610,000	860,000	2,000,000	5,750,000	
138T	8,760,000	870,000	2,000,000	5,890,000	
140T	8,390,000	830,000	2,000,000	5,560,000	

• 각 단위세대는 동일 타입의 경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으나, 주거동별, 층별로 발코니면적(서비스면적), 개방형 발코니 난간의 형태 및 재질은 상이하므로 계약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KEB하나은행	215–910031–55104	㈜호반건설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발코니 확장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2020.01.14.(화)~2020.01.16.(목)]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발코니 확장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발코니확장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 됨)   • 상기 관리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일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3)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실내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실내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05.12.2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과 드레스룸 천정형 시스템 선반 등 품목 및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선정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견본주택 홍보관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 옵션(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1)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선택안	설치개소	설치위치	세대당 설치금액 옵션1 (일반형)	옵션2 (고급형)	비고
108A,B,C,T	1안	3	거실+주방+침실1	4,580,000	5,330,000	• 제조사 : LG전자(IoT 연계 기능 미적용) • 시스템에어컨 IoT 적용시 Wi–Fi 모듈 필요 (7만원/실내기) → 시스템에어컨 IoT 적용을 원하는 계약자는 설치업체와 직접 계약 (에어컨 기존 장비에 Wi–Fi 모듈설치, 사양 및 제품변경 되지 않음) → LG전자 전용어플로 제어가능 • 홈 IoT(카카오)와 연동되지 않음 • 고급형 : 공기청정기능 • 모델명, 계약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 (홍보관 및 계약시 확인 필요)
	2–1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050,000	7,050,000	
	2–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050,000	7,050,000	
	3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090,000	8,340,000	
	4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8,140,000	9,640,000	
110A,T	1안	3	거실+주방+침실1	4,580,000	5,330,000	
	2–1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050,000	7,050,000	
	2–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050,000	7,050,000	
	3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090,000	8,340,000	
	4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8,140,000	9,640,000	
138T	1안	3	거실+주방+침실1	6,350,000	7,100,000	
	2–1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980,000	7,980,000	
	2–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980,000	7,980,000	
	3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8,530,000	9,780,000	
	4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9,480,000	10,980,000	
140T	1안	3	거실+주방+침실1	6,350,000	7,100,000	
	2–1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980,000	7,980,000	
	2–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980,000	7,980,000	
	3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8,530,000	9,780,000	
	4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9,480,000	10,980,000	

2) 추가선택 품목 (발코니 확장시 선택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구분	품목	금액
108A / 108T	현관	중문 + 현관바닥 화강석 + 에어샤워기 + 에어브러쉬 + 현관창고도어 + 시스템가구 + 전열교환기 헤파필터	4,000,000
	거실 아트월	대리석	3,600,000
	수입가구옵션 외	3구/1구 인덕션 + 후드 + 수전 + 싱크볼 + 와인셀러 +아일랜드 + 주방상판, 벽체 + 오븐 + 빌트인 김치냉장고 + 주방 팬트리 도어 + 시스템가구 + 하부장 + 손빨래세탁볼 + 수전	42,480,000
	주방 팬트리(수입주방가구 미선택시)	주방팬트리도어 + 시스템가구	2,800,000
	바닥재	폴리싱타일(거실 + 주방) + 원목마루(침실1 + 침실2 + 침실3 + 드레스룸) (폴리싱 타일은 원목마루로 교체 시공 가능)	10,100,000
	침실1	드레스룸도어+시스템가구+화장대+슬라이딩도어+침실1비데일체형양변기+빨래건조대	6,840,000
108B	현관	중문 + 현관 바닥 화강석+에어샤워기 + 에어브러쉬 + 현관창고도어 + 시스템가구 + 전열교환기 헤파필터	4,100,000
	거실 아트월	대리석+복도팬트리도어+시스템가구	7,220,000
	수입가구옵션 외	3구/1구인덕션 + 후드 + 수전 + 싱크볼 + 아일랜드 + 주방상판,벽체 + 오븐 + 빌트인김치냉장고 + 하부장 + 손빨래세탁볼 + 수전	37,500,000
	바닥재	폴리싱타일(거실 + 주방) + 원목마루(침실1 + 침실2 + 침실3 + 드레스룸) (폴리싱 타일은 원목마루로 교체 시공 가능)	8,500,000
	침실1	드레스룸 도어 + 시스템가구 +화장대 + 슬라이딩 도어 + 침실 1 비데일체형 양변기 + 빨래건조대	5,380,000
108C	현관	중문 + 현관바닥 화강석 + 에어샤워기 + 에어브러쉬 + 현관창고도어 + 시스템가구 + 전열교환기 헤파필터	5,690,000
	거실 아트월	대리석	5,200,000
	수입가구옵션 외	3구/1구 인덕션 + 후드 + 수전 + 싱크볼 + 아일랜드 + 주방상판, 벽체 + 오븐 + 빌트인 김치냉장고 + 하부장 + 손빨래세탁볼 + 수전 + 주방 팬트리 도어 + 시스템가구 + 침실2 드레스룸 도어 + 침실2 시스템 가구 + 슬라이딩도어(슬라이딩 도어 또는 벽체 선택 가능)	38,500,000
	바닥재	폴리싱타일(거실 + 주방) + 원목마루(침실1 + 침실2 + 침실3 + 드레스룸) (폴리싱 타일은 원목마루로 교체 시공 가능)	8,300,000
	침실1	드레스룸 도어 + 시스템가구 + 화장대 + 슬라이딩도어 + 침실1비데일체형양변기 + 빨래건조대	7,140,000
110A / 110T	현관	중문 + 현관바닥 화강석 + 에어샤워기 + 에어브러쉬 + 현관창고도어 + 시스템가구 + 전열교환기 헤파필터	4,000,000
	거실 아트월	대리석	3,600,000
	수입가구옵션 외	3구/1구 인덕션 + 후드 + 수전 + 싱크볼 + 와인셀러 +아일랜드 + 주방상판, 벽체 + 오븐 + 빌트인 김치냉장고 + 주방 팬트리 도어 + 시스템가구 + 하부장 + 손빨래세탁볼 + 수전	42,480,000
	주방팬트리(수입주방가구 미선택시)	주방팬트리도어+시스템가구	2,800,000
	바닥재	폴리싱타일(거실 + 주방) + 원목마루(침실1 + 침실2 + 침실3 + 드레스룸) (폴리싱 타일은 원목마루로 교체 시공 가능)	10,100,000
	침실1	드레스룸 도어 + 시스템가구 + 화장대 + 슬라이딩도어 + 침실1비데일체형양변기 + 빨래건조대	6,840,000
138T / 140T	현관	중문 + 현관바닥 화강석+에어샤워기 + 에어브러쉬 + 현관창고도어 + 시스템가구 + 전열교환기 헤파필터 + 복도장	5,960,000
	거실 아트월	대리석	3,600,000
	수입가구옵션 외	3구/1구 인덕션 + 후드 + 수전 + 싱크볼 + 와인셀러 + 아일랜드 + 주방상판, 벽체 + 오븐 + 빌트인 김치냉장고+ 주방 팬트리 도어 + 시스템가구 + 하부장 + 손빨래세탁볼 + 수전	42,480,000
	바닥재	폴리싱타일(거실 + 주방) + 원목마루(침실1 + 침실2 + 침실3 + 드레스룸) (폴리싱 타일은 원목마루로 교체 시공 가능)	10,100,000
	침실1	드레스룸 도어 + 시스템가구 + 화장대 + 슬라이딩도어 + 침실 1 비데일체형 양변기 + 빨래건조대	8,070,000
	침실3 반침장	침실3 반침장	1,220,000

5)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납부일정 및 납부계좌
• 납부일정

구분	계약금 (계약 시)	중도금 (2021–04–05)	잔금 (입주지정일)	비고
플러스 옵션 선택 품목 납부계좌	10%	20%	70%	공사부위 홍보관 및 계약 시 확인 필요

•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플러스 옵션 선택 품목 납부계좌	KEB하나은행	215–910031–55104	㈜호반건설

• 상기 계좌는 플러스옵션 선택품목 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2020.01.14.(화)~2020.01.16.(목)]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 됨)   • 상기 관리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일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6)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홍보관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포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선택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수입 주방가구 옵션 선택시 가스배관이 노출 시공되며, 상부 천정 몰딩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조주방 옵션 선택시 벽붙이용 손빨래수전(냉,온수)로 변경되며 선택 옵션으로 인한 증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에어컨), 침실1,2,3(벽걸이형 에어컨) 설치기준에만 해당 설치 · 시공되며, 위치 이동, 추가 설치 등의 요구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개별적으로 가변형벽체 제거 및 변경 시 매립냉매배관 설치가 불가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 및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침실 복도 중문 설치 등 에어컨 설치와 간섭되는 설계 시 냉매배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경, 계약자 인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거실, 침실1,2,3)은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세대는 매립냉매배관(4개소)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일부 천장 부위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부세대 바닥배수시 천장단열재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및 침실 슬라이딩 중문 선택 시 슬라이딩 도어 가능 지 세부 설치 기준에 따라 도어와 복도 벽 마감 사이에 틈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천연화강석 마감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건축자재 라돈 저감 · 관리지침서에 따른 권고기준에 적합한 석종으로 시공 예정이나, 현장 시공 상황에 따라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108A/110A/108T/110T/138T/140T : 현관 바닥–현대 칸스톤 킨드레드누보/디딤판–현대 칸스톤 아라미스, 부엌벽실렌다어–롯데 래디언스 골드캐년그레이 /108B,C : 현관 바닥– 현대 칸스톤 앰브로셜누보, 현관 디딤판–현대 칸스톤 블랙 스누우, 부엌벽실 제다어–롯데 래디언스 골드캐년그레이 기준)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의해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하자발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멀티형 실외기 설치를 권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외기를 2단 설치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미계약시 현관, 침실 등 칸막이 벽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플러스 옵션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 · 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 · 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 거실(주방, 식당), 복도 〈타일, 화강석, 디딤석(걸레받이 포함)〉 : 현관바닥 〈PVC륨〉 : 각 침실바닥 〈타일 및 재료분리대〉 : 발코니, 욕실바닥	각실 바닥 미장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바닥 방수, 하향식 피난구 덮개
벽, 천정재	〈벽지 및 천정지〉 : 현관, 거실, 주방, 식당, 복도, 침실 〈벽 및 천장 도장〉 : 발코니 〈타일〉 : 주방벽, 욕실벽, 인테리어 마감 〈기타〉 : 몰딩, 우물천정	벽 :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조명기구	조명기구 일체	콘센트 및 스위치용 배관, 배선
욕실	욕실바닥 및 벽 타일(타일 시공을 위한 미장 포함),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천정재, 석재(인조대리석 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욕조, 코킹,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폰, 세면기, 양변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슬리브, 전기, 통신배관 배선
주방가구 및 기타사항	주방가구 :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TV, 주방벽타일, 주방수전(절수기 포함), 싱크볼, 음식물탈수기, 주방 자동소화기, 가스쿡탑(3구), 렌지후드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가스), 소방관련시설,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TV폰 등의 전기 입선), 주방 배기덕트, 세대환기(장비,덕트)
일반가구	신발장, 붙박이장, 파우더장, 드레스룸, 팬트리 도어, 시스템가구(선반류 포함)	없음
창호 및 기타사항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실외기실 플라스틱 출입창호, 발코니수전류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 발코니 도어, 하향식 피난구 도어, 현관카메라,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 (거실, 침실1,2,3), 하향식 피난구 : 바닥마감을 고려해 돌출되어 시공됨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108A	108B	108C	110A	108T	110T	138T	140T
기본선택(마이너스 옵션 금액)	34,355,600	35,512,700	34,784,900	34,370,800	35,994,500	34,370,800	44,843,600	42,682,400

4)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의 경우 공사상 연관성(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사용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배관, 배선,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 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분쟁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용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후 입주자 본인이 마이너스 옵션 부분을 직접 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 및 인접 세대에 대한 직간접 피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 및 재산상 손해 발생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이전에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 또는 발코니확장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마이너스 옵션 계약체결 익일 이후 사용승인 예정일 이후 변경이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세대를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 · 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옵션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공시 가스쿡탑은 가스관련 규정에 의거 과열방지장치 부착 제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이 중도금대출 보증규제금액(분양가9억 초과)미만이더라도 중도금 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대출 보증규제에 해당됩니다.

Ⅶ 기 타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 · 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예정일시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통보함.
•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에 따라 실제 등기 면적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영향 없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공급면적의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   • 홍보관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홍보관의 단지모형(색채, 단지 내부인 단차, 조형, 인근 기반시설간의 거리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모형물, 인쇄물,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표현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홍보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홍보관용 소방시설임.
• 사이버 홍보관의 VR(동영상)은 홍보관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용 포함된 전시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이버 홍보관상의 전시품목 단위 및 홍보관을 반드시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 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홍보관 방문 등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는 계약 체결시 홍보관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 등을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있음.   • 본 주택의 공사 중 천재지변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홍보관 내에는 분양 관련 사항 포함 마이너스옵션 등 전시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본 공고사항에서 시공품은 시공 · 설치되지 않음.
• 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형태, 색상,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홍보관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참고 사항이며, 홍보관 등에 표현되지 않은 단지 모형의 조경, 차 · 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대고자치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관리예치금을 입주전에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동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부정리 시 대지경계와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단지 주변 협오시설 공지
• 단지 동측 630M 내외 열병합발전소(전기/열공급시설)가 위치하여 단지 내에서 시설물이 보일 수 있으며, 겨울철 굴뚝에서 발생하는 하얀 수증기로 일부 세대의 일조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등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으로, 발코니 비확장을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세대에는 별도의 추가공사비를 납부해야 함.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상부에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결로 발생 등으로 인한 탁자 매핑 또는 입주 점검시 해당 세대 발코니 부위 또는 인접세대 발코니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는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별도 계약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 선택에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분양가에 대해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납부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선택세대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이는 하자가 아님).   • 확장된 발코니 및 결로, 화장실 등은 발생하면 하자가 아닌 관리책임으로 추가로 결로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발코니 새시 설치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합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선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홍보관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 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Ⅷ 단지 여건 사항

■ 택지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 위례신도시는 행정구역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로 분류되어 있음.
•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 · 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학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국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 취소 · 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당해 위례택지개발지구의 사업시행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서 향후 택지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이용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본 아파트 대지경계에 구조물 등이 설치 또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지하안전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당해 지구가 사업진행지구이어 현재 공사 중으로서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당해 지구 위례택지개발지구위례택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위례신도시 내 경전철 계획(위례선 및 위례신사선)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연기, 취소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

(이하 단지 여건 사항 및 단지 내부여건 세부 항목은 원문 참조: 학교 관련 사항 – 초중학교 배정은 향후 교육지원청 결정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며,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업무 범위가 아님. • 서울특별시는 평준화지역으로 고등학교의 일반고, 학군 학생 배정방법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정책에 따라 진행함. • 신설 예정 학교 위치 및 개교 시기의 미정으로 원거리 통학이 예상되며, 향후 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개교 전 까지 송파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통학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임.)

■ 단지 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407동 동측 및 1408/1409동 남측 지하에 주민공동시설 선큰이 설치되어 사용에 따른 불빛,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내보다 높게 시공되어 점검용 출입만 가능함.

Ⅸ 설계 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돌출형 노출 발코니에는 별도의 급수설비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빗물유입시 외부로 유출이 가능하도록 시공되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돌출형 발코니 또는 테라스로 출입가능한 곳에 설치되는 창호에는 수동 잠금장치가 설치됨.
• 단위세대 품목 등 세부 사항은 원문 참조.
• 각 세대별 현관 전용창호 설치되지 않을 세대가 있으며 이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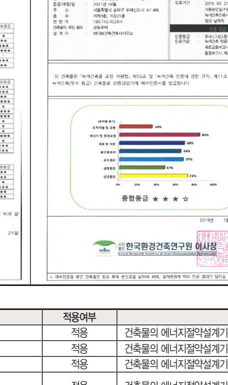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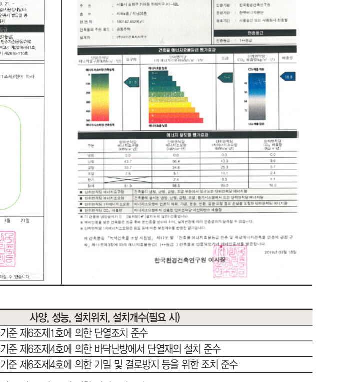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 · 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한 효율 이상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 사 명	㈜동우이앤씨	신동아 전기감리(주)	㈜금라기술단	㈜금라기술단
감리금액	2,844,303,000	493,376,000	214,600,000	17,400,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 공시내용 (단위: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293,439,181,922	공사비	건축	용접공사	–	공사비	기계설비	가스설비공사	630,918,000
		기간이자	36,906,145,781			조적공사	1,682,448,000			자동제어설비공사	258,838,000
		필요적 경비	14,611,360,248			미장공사	3,106,058,000			특수설비공사	423,104,000
		그밖의 비용	11,254,784,191			단열공사	2,115,516,000			공조설비공사	1,424,448,000
계			356,211,472,142			방수 · 방습공사	1,551,378,000			기계공사 계	11,651,047,000
공사비	토목	토공사	4,386,979,000			목공사	2,814,865,000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8,865,207,000
		흙막이공사	–			가구공사	2,329,954,000			정보통신공사	5,435,601,000
		비탈면보호공사	–			금속공사	2,992,817,000			소방설비공사	5,726,795,000
		옹벽공사	–			지붕 및 홈통공사	–			승강기공사	1,455,623,000
		석축공사	–			창호공사	3,203,123,000			그 밖의 공종 계	21,483,226,000
		우 · 오수공사	889,756,000			유리공사	1,391,255,000		그 밖의 공사비	일반 관리비	12,197,750,000
		공동구공사	–			타일공사	2,750,156,000			이윤	8,541,660,00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돌공사	3,267,832,000			그 밖의 공사비 계	20,739,410,000
		도로포장공사	938,289,000			도장공사	1,698,625,000	계		계	157,907,436,00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도배공사	1,310,369,000	간접비		설계비	1,252,999,000
		정화조시설공사	–			수장공사	3,332,542,000			감리비	3,569,679,000
		조경공사	3,995,814,000			주방용구공사	1,326,545,000			일반분양시설 경비	8,367,312,000
		부대시설공사	2,170,516,000			잡공사	3,765,619,000			분담금 및 부담금	700,000,000
		토목공사 계	12,381,354,000			건축공사 계	91,652,399,000			보상비	–
	건축	공통가설공사	4,562,023,000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1,407,433,000			기타 사업비성 경비	58,314,074,577
		가시설물공사	905,934,000			급탕설비공사	1,407,433,000	계		계	72,204,064,577
		지정 및 기초공사	2,620,737,000			오배수설비공사	1,908,931,000	그 밖의 비용		그 밖의 비용	71,878,527,281
		철골공사	–			위생기구설비공사	1,148,594,000	합 계		합 계	658,201,500,000
		철근콘크리트 공사	44,924,603,000			난방설비공사	3,041,348,000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의거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구분		금액(원)	비고
택지비	택지비가산비	62,772,290,220	택지대금에 대한 가산이자, 제세공과금 및 등기수수료,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필요적경비
건축비	건축비가산비	71,878,527,281	구조형식 가산비(지상층), 녹색건축, 법정초과 복리시설, 인텔리전트설비 공사비(홈네트워크, 에어컨냉매배관, 초고속통신특등급, 기계환기설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법령 및 조례등 제개정에 따른 가산비(소화내진설비, 손끼임 방지장치, 지하층 층고 추가, 저층부 석재, 외관특화,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분양보증수수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위례신도시 A1–4블록 호반 써밋 송파Ⅱ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5612019–101–0009500호	오천이백육십사억구천칠백칠십육만원정 (₩ 526,497,76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보증이행하지 않습니다. (이하 세부 조항 원문 참조)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를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시공회사	(주)호반건설	204111–0007384

■ 홍보관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 2관
■ 사이버 홍보관 : www.hobansummit–sp2.co.kr
■ 분양문의 : ☎ 1566–322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호반 써밋 송파Ⅱ A1–4블록 (108㎡~140㎡ 총 700세대)

시행 | 시공 호반건설   1566 · 3220

오시는 길   호반건설 신사옥 홍보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 2관 1층)